

202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4,84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9,789억 2천 9백만원 대비 10.2% 증액(5,058억 9천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978,929	4,978,929	5,484,820	505,891	505,891	10.2	10.2	
행 정 관 리	소 계	455,571	455,571	608,493	152,921	152,921	33.6	33.6
	행정운영경비	233,376	233,376	233,376	-	-	-	-
	재무활동	10,414	10,414	10,414	-	-	-	-
	사업비	211,781	211,781	364,702	152,921	152,921	72.2	72.2
교부금	4,523,358	4,523,358	4,876,327	352,969	352,969	7.8	7.8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6예산		2026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23,358	4,523,358	5,029,248	505,891	11.2
조정교부금	4,523,358	4,523,358	4,876,327	352,969	7.8
고유가 피해지원금	-	-	152,921	152,921	순증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4,848억 2천만원 대비 10.2% 증액(5,058억 9천만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증액(1,529억원)과 “조정교부금” 사업 증액(3,530억원) 2건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4,978,929	4,978,929	5,484,820	505,891	505,891	10.2	10.2	
행정 관 리	소 계	455,571	455,571	608,493	152,921	152,921	33.6	33.6
	행정운영경비	233,376	233,376	233,376	-	-	-	-
	재무활동	10,414	10,414	10,414	-	-	-	-
	사업비	211,781	211,781	364,702	152,921	152,921	72.2	72.2
교부금	4,523,358	4,523,358	4,876,327	352,969	352,969	7.8	7.8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세부사업	기정예산(A)	2025년제2회 추경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 사유	
세 출	4,978,929	5,484,820	505,891		
자치 행정과	조정교부금	4,523,358	4,876,327	352,969	· 2025년 시 보통세 세입 예결산차이로 발생하는 조정교부금 결산 차액 일부 반영 자치구조정교부금 : 4,523,358백만원 → 4,876,327백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	152,921	152,921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피해 지원금 및 부대경비 시비 부담분 편성 사회보장적수혜금 : 0원→151,306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0원→1,615백만원

- 서울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중동발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속 피해 계층 밀착지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및 정부의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신속 지원을 통하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¹⁾
- 다만, 행정국의 “조정교부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신규)” 증액 사업 편성 등이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와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고유가 위기 겪는 민생현장 위해 1조 4천억원 긴급편성”, 2026년 4월 14일자 참조.

가)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2025년 예·결산 차액(1차)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4조 5,233억 5,760만원) 대비 7.8%(3,530억 6,932만원)를 증액 조정하여 4조 8,763억 2,692만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876,326,917	4,523,357,600	352,969,317
조정교부금	4,876,326,917	4,523,357,600	352,969,317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구 조정교부금	○2025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1차) 352,969,317,000원 = 352,969,317천원
	증감사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세입의 예·결산 차이로 발생하는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을 일부 반영

- ※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한 합리적 자원 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세원 편재로 인한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자치구가 표준적인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 조정교부금 제도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시 보통세의 22.6%](#)
- **구 분**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 **주요기능** : 자치구 자원 보전 및 재정 균형화
- **배분방식**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차등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 : 재난·재해, 자치구 청사 및 공공시설 신설·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

「지방자치법」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5년 보통세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전망액(5,851억원)의 60%인 3,530억원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구비 매칭비 마련 등 조정교부금을 조기 교부하지 않을 시 추경 편성이 불가능한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 행정국은 1차 추경 후 잔액(2,321억원)은 건전재정운영평가 등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예정이라고 함(자치구별 배분액은 금년 하반기 확정 예정).

〈 2025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예산액(A)	'25년 결산액(B)	결산차액(B-A)
계	4,286,932	4,933,298	646,365
보통세분	4,265,110	4,915,231	650,121*
일반(90%)	3,838,599	4,423,708	585,109
특별(10%)	426,511	491,523	65,012
레저세분**	19,959	16,965	▲2,994
지역자원시설세분**	1,862	1,101	▲761

* 市 보통세(7종) 예·결산차액(2조 8,766억원)의 22.6%

* 레저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의 65%으로 보통세분과 별도 정산

※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6일 제출자료 재인용.

〈 2026년 일반조정교부금 1차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1차 추경예산 (B)	증감액 (B-A)	증감율 (B/A)
계	4,523,358	4,876,327	352,969	7.8%
보통세분	4,505,485	4,858,454	352,969	7.8%
일반(90%)	4,054,937	4,407,906	352,969	8.7%
특별(10%)	450,549	450,549	-	-
레저세분	16,521	16,521	-	-
지역자원시설세분	1,352	1,352	-	-

※ 나머지 보통세분, 레저세분, 지역자원시설세분 결산차액은 결산심의·확정 후 교부

※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6일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하여 2025년 당초 산정 결과에 따른 자치구 재정 부족액을 전액 교부하게 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0%)를 달성하게 됨.

〈 자치구별 재정부족액 및 추경 교부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요액 (②)	재정부족액 (③ = ②-①)	본예산 교부액 (④)	추경 교부액* (=③-④)
합 계	8,504,671	12,696,239	4,191,568	3,838,599	352,969
평 균	340,187	507,850	167,663	153,544	14,119
종로구	372,418	457,437	85,018	72,301	12,717
중구	411,928	441,931	30,003	17,717	12,286
용산구	367,351	462,792	95,441	82,575	12,866
성동구	311,947	450,900	138,952	126,417	12,536
광진구	306,213	479,150	172,938	159,617	13,321
동대문구	300,475	513,144	212,669	198,403	14,266
중랑구	289,469	516,058	226,589	212,242	14,347
성북구	291,267	547,348	256,081	240,864	15,217
강북구	256,687	488,470	231,783	218,203	13,580
도봉구	235,903	459,927	224,025	211,238	12,786
노원구	338,634	637,821	299,186	281,454	17,732
은평구	310,076	562,437	252,361	236,725	15,636
서대문구	311,592	493,613	182,021	168,298	13,723
마포구	408,674	544,680	136,007	120,864	15,143

구 분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요액 (②)	재정부족액 (③ = ②-①)	본예산 교부액 (④)	추경 교부액* (=③-④)
양천구	319,407	505,472	186,065	172,012	14,053
강서구	421,978	653,985	232,007	213,826	18,182
구로구	330,858	548,302	217,444	202,201	15,243
금천구	279,922	442,401	162,478	150,179	12,299
영등포구	444,866	564,305	119,438	103,750	15,688
동작구	304,626	482,988	178,362	164,934	13,428
관악구	300,624	546,936	246,313	231,107	15,205
서초구	566,257	592,578	26,321	9,847	16,474
강남구	-	-	-	-	-
송파구	638,002	722,888	84,885	64,788	20,097
강동구	385,497	580,677	195,180	179,037	16,143

* 2025년 당초 산정결과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전액 교부(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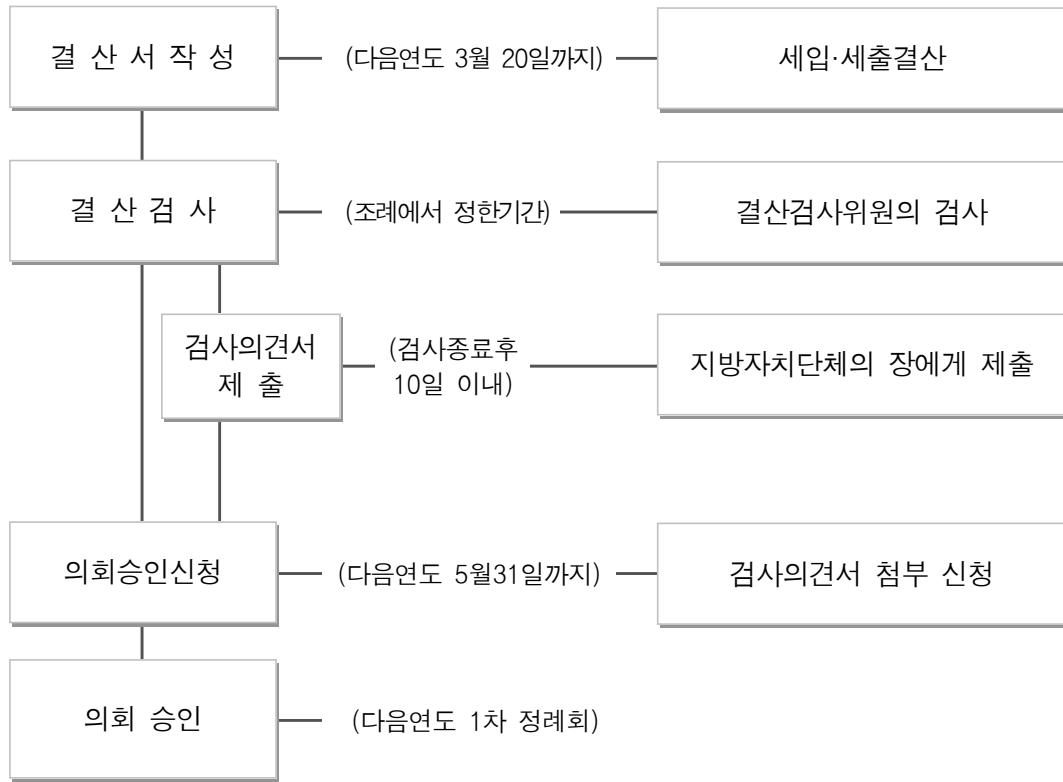
※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6일 제출자료 재인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재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진행 중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도 완료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가결산 금액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은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자금의 조기 유통을 위해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확실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여부, 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예산심의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결산 〉



※ 출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024년 12월, 40면 재인용.

- 또한, 최근 5년간 보통세분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결산 차액을 살펴보면, 최소 944억원('23년)에서 최대 1조 2,377억원('21년)으로 매우 불규칙하며, 특히, 2025년 가결산액(6,501억원)은 전년(1,149억원) 대비 465.7% 이상 급증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세입추계가 실제 세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규모의 오차는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바, 서울시는 세수 추계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아울러, 조정교부금의 과도한 결산차액 발생으로 인해 뒤늦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할 경우, 자치구는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의 경직성이 높아지는바, 보통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통한 자치구에 안정적인 재원이 적기에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의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로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름.

〈 최근 5년간 보통세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2021년	3,278,496	4,516,181	1,237,685	'22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완료
2022년	3,812,308	4,496,786	684,478	'23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완료
2023년	4,011,779	4,106,167	94,388	'24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완료
2024년	4,149,571	4,264,479	114,908	'25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완료
2025년	4,265,110	4,915,231	650,121	'26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예정

* 2025년 결산액 및 결산차액은 가결산에 따른 전망액

※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6일 제출자료 재인용.

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신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26년 4월)에 따라 서울시 부담분(시비)과 부대경비 등 1,529억 2,12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52,921,278	0	152,921,278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51,305,933	0	151,305,93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15,345	0	1,615,345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151,305,933,000원 = 151,305,933천원
	증감사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 국가적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집행을 위해 서울시 시비 매칭분 편성 ※ 국:시:구비 70%:18%:12% 기준으로 편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경비 1,615,345,000원 = 1,615,345천원
	증감사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집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등 부대경비 편성 ※ 국:시:구비 50%:30%:20% 기준으로 편성

○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²⁾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³⁾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는 차등적으로 70%를 지원하기로 제출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6.4.10.)되었음.

※ 최근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 물가 상승 등 국내경제에 악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민·소상공인(에너지 소비 비중 高), 中企·농민(고유가+나프타·요소 차질)*·지방(석화 등 산업·고용 악화) 등 취약부문 타격으로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2026년 3월 26일자, 1면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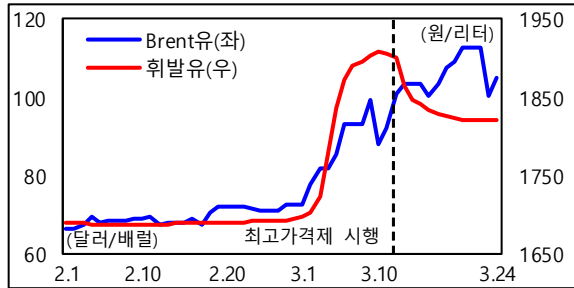
* Brent유(불/배럴): ('26.2.27) 72.5 (3.12) 100.5 (3.17) 103.4 (3.25) 99.2 <2.27일비 +41%>
 * 휘발유(원/L): (2.27) 1,693 (3.12) 1,899 (3.25^{19사}) 1,819 <3.12일비 △80원>
 경유(원/L): (2.27) 1,597 (3.12) 1,919 (3.25^{19사}) 1,815 <3.12일비 △104원>

2)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년 3월 31일, 1면 참조.

3)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제출 2026년 3월 31일.

* (나프타) 중동의존도 70%+ 최근 가격 급등(26.2월말比 +67%) / (요소) 카타르(비료용 비중 20%) 생산차질

국제유가 및 국내휘발유 가격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

	2.27일	3.10일	3.25일	(2.27일比)
코스피(pt)	6,244	5,533	5,642	(△9.6%)
국채금리(3y, %)	3.041	3.283	3.558	(+52bp)
환율(원/달러)	1,440	1,469	1,500	(△4.0% <small>절하</small>)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2026년 3월 26일자, 1면 재인용.

〈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

- 지급대상 : '26.3.30. 기준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의 70%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60만원

구 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장
-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 : (1차) 2026.4.27.(월) ~ 2026.5.8.(금)
(2차) 2026.5.18.(월) ~ 2026.7.3.(금)
 -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국민의 70% : (2차) 2026.5.18.(월) ~ 2026.7.3.(금)
- 사용기한 : 2026.8.31.(월)까지 ※ 1·2차 동일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먼저, 국고보조율(서울시 70%, 그 외 80%)은 서울시만 70%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복지 대상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규모 등 서울시의 행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분담 비율 결정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2026년 3월 주민등록인구 기준(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으로 서울시 인구수(9,304,400명)는 경기도(13,745,673명)보다 적음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국고보조금 1차 확정예산(1차 지급 전액, 2차 지급 일부, 부대비용 전액) 통보에 따른 매칭 지방비는 서울시(본청 및 자치구: 2,124억 3백만원)가 경기도(본청 및 시: 1,946억 8천만원)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음.
- 더욱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서울시만 국고보조율이 75%(그 외 90%)로 차등 적용됨에 따라 막대한 부담분(3,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직결되었는데, 향후 국고보조율 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인구 밀집도와 복지 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형평성 있는 분담 비율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정부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서울시는 부담분인 3,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후,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음.
- 다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 수급자와 한부모·차상위가구(‘26.3월 기준)는 1차로 우선 지급하지만, 소득하위 70%는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나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2월말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로 시비 부담분인 1,529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26.4.15.)하였음.

〈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울시 지급대상자 추계현황('26.2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시민 (등록외국인 수 포함)	한부모·차상위	기초수급자	소득하위 70%
서울	9,577,448	51,862	467,758	5,599,837

※ (1차 대상자) 건강보험공단 DB로부터 추출한 인원수

- 4.15.자 행정안전부 통보 인원 : 523,922명 (4,302명↑)

-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대상인원 추출 시점이 1달여 차이가 있어 1차 대상인원에 차이가 발생

※ (2차 대상자) 서울시 인구 9,577,448명(등록외국인 수 포함)의 약 63.89%에서 1차 대상자 제외한 수

-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지급대상자 수를 적용하여 추정

- 행정안전부는 2차 대상인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여 미통보 상황

※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7일 제출자료 재인용.

※ 서울시는 지급대상자 추계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소요예산을 8,460억원으로 추정하였고, 분담비율(국비 70:시비 18:구비 12)에 따라 국비 5,911억원, 시비 1,529억원, 구비 1,020억원으로 소요예산을 추계하였음.

구분	소요예산	국비 부담(70%)	市 부담(18%)	區 부담(12%)
계	8,460억 원	5,911억 원	1,529억 원	1,020억 원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7일 제출자료 재인용.

- 이후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국고보조금 1차 확정 예산 통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759, 2026.4.15.)에 따른 시비 부담분(1차 지급 전액, 2차 지급 일부, 부대비용 전액)은 1,274억원이나, 이는 최종 확정액이 아니므로, 향후 2차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라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1차 확정 예산 통보('26.4.15.) 〉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금액	708,010	495,608	127,441	84,961
비율	100%	70%	18%	12%

※ 출처 : 행정국, 2026년 4월 18일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행정국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26.4.15.) 당시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 전으로, 국비(4,956억 8백만원)를 세입과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직후 국고보조금 1차 확정 통보('26.4.15.)가 이루어진바,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교부될 경우 간주처리를 통해 신속한 집행을 준비함과 동시에, 확정된 국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은 아직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 부담분(1,529억원)을 추계로 미리 편성한 것으로, 과다 추계로 인한 예산 편성은 아닌지 여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가 추계보다 적어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사장(死藏)시킴으로써 더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고보조금 확정 결과에 따른 시비 매칭 조정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아울러, 지원금 신청 기간(1차 4.27. ~ 5.8., 2차 5.18. ~ 7.3.)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6.6.3.) 사무로 행정 역량이 집중되는 시기와 겹치면서, 주민센터 현장 인력의 업무 폭증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의 선제적 배치, 효율적인 민원 분산 대책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